
**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
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**
[의안번호 2107742, 정부안]

2021. 5.

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

1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

-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중기중앙회 조정협의권 추가(안 제16조의2 제3항~제5항)
 - 중기조합 신청 시 중기중앙회가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가능
-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자료제출명령 도입(안 제25조의7)
 - 손해배상청구 시 법원은 원사업자 당사자에게 손해 증명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,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
- 비밀유지명령 위반 벌칙(안 제29조제1항제1호)
 - 비밀유지명령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
2 중견기업계 의견

-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추가 반대
 -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원사업자-수급사업자간 자율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현행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
 - 중기중앙회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참여한다면 기업규모가 작은 중견기업도 사업자단체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 보완 필요

□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자료제출명령 도입 반대

- 하도급법 위반 시 공정위 조사를 통해서도 손해액 산정이 가능
- 법원의 영업비밀을 포함한 자료제출 요구는 원사업자의 핵심자산 유출 위험성 존재

□ 비밀유지명령 위반 벌칙 보완필요

- 영업비밀 유출 발생 시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필요

3 세부 건의내용

1.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중기중앙회 조정협의권 추가(안 제16조의2 제3항~제5항) : 반대

□ 현재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 거래관계는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, 하도급대금 조정이 필요하면 기업간 자율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음

- 중기중앙회 조사결과 '20년 납품대금 관련하여 불공정거래를 경험하지 않은 기업은 95.6%로 나타난 반면, 불공정거래를 경험해본 중소기업은 4.4%에 불과¹⁾
- 원사업자로부터 납품단가 인하 경험 여부도 중소기업의 80.5%는 납품 단가 인하를 경험하지 않은 반면,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19.5%로 낮게 나타남

1) 대·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방안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, 중기중앙회, 2021.3

-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한 중소기업 중 종사자 수 규모가 작을수록 납품 단가 인하 요구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중견·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간 거래 시 불공정 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여짐
- * 중소기업이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인하요구 경험 : 10인 미만(31.4%), 20인 미만(19.5%), 50인 미만(18.5%), 100인 미만(14.3%), 100인 이상(14.9%)
- 또한, 원가상승 요인 발생으로 하도급업체가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한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의 요청을 대부분 수용
-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인상 요청 수용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
- *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인상 요청 수용 비율 : ('17) 93.0% → ('18) 94.0% →('19) 96.0% (하도급서면실태조사, 공정위, 각 연도별)

□ 매출 규모가 작거나 인력이 부족한 중견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

-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대상 원사업자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의 부담은 더욱 가중
- * 공정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상을 매출액 3,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(2021.1)
- 매출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도 매출액 규모가 큰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할 경우 중기중앙회 등과 조정협의를 해야 함
- * 전체 중견기업 5,007개사 중 매출액 1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3,020개사(60.4%)임

<표> 매출액 구간별 중견기업 현황

(단위 : 개사,%)

구분	1백억원 미만	1~5백억원 미만	5백~1천억원 미만	1~2천억원 미만	2~3천억원 미만	3~4천억원 미만	4~5천억원 미만	5천억~1조원 미만	1조원 이상	합계
중견	1,285 (25.7)	1,071 (21.4)	664 (13.3)	933 (18.6)	434 (8.7)	200 (4.0)	105 (2.1)	199 (4.0)	116 (2.3)	5,007 (100)

* 자료 : '19년 기준 『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』 확정 결과(통계청, 2021.1)

- 중견기업의 52.2%(2,615개사)가 종사자 수가 100인 미만의 기업이며,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정협의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인적·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하므로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음

<표> 종사자 수별 중견기업 현황

(단위 : 개사,%)

구분	100명 미만	100명~ 300명 미만	300명~ 500명 미만	500명~ 1,000명 미만	1,000명 이상	합계
총계	2,615 (52.2)	1,253 (25.0)	462 (9.2)	429 (8.6)	248 (5.0)	5,007 (100)

* 자료 : '19년 기준 『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』 확정 결과(통계청, 2021.1)

-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는 현행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, 법 개정을 통해 중기중앙회가 조정협의에 참여한다면 중견기업도 사업자 단체 등 유관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 보완 필요

2.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자료제출명령 도입(안 제25조의7) : 반대

- 하도급 위반행위 발생시 공정위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²⁾하여 조사 가능
 - 공정위는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, 현장조사, 자료제출 등을 통해 법 위반 행위 조사³⁾ 진행이 가능
 - 또한, 하도급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공정위를 통해 해당사건 기록을 볼 수 있으며,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기초로 손해액 인정 가능⁴⁾

2) 하도급법 제27조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의 준용) ②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,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50조, 제50조의2 및 제53조의3을 준용한다. 하도급법 제35조(손해배상책임)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.

3) 공정거래법 제50조(위반행위 조사 등)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.

1. 당사자,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
2.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
3. 사업자,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,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

4) 공정거래법 제56조의2(기록의 송부) 및 제57조(손해액의 인정)

- 법원이 자료제출명령을 통해 영업비밀을 포함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원사업자의 핵심자산 유출 위험성 존재
 - 하도급분쟁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쌍방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안이며, 공정위 조사를 통해 피해액 추산이 가능함에도 법원이 영업비밀 자료 제출까지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재산권 침해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
- 개정안은 특허법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간 거래관계 분쟁을 기술구조에 기반 한 특허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
 - 특허법 자료제출명령제도는 특허권의 기술적 특수성·복잡성을 이유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⁵⁾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
 - 반면 하도급분쟁은 공정위 조사를 통해 피해업체의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이미 가능하므로 자료제출명령제와 같은 특칙을 하도급법상에 별도로 도입할 당위성이 부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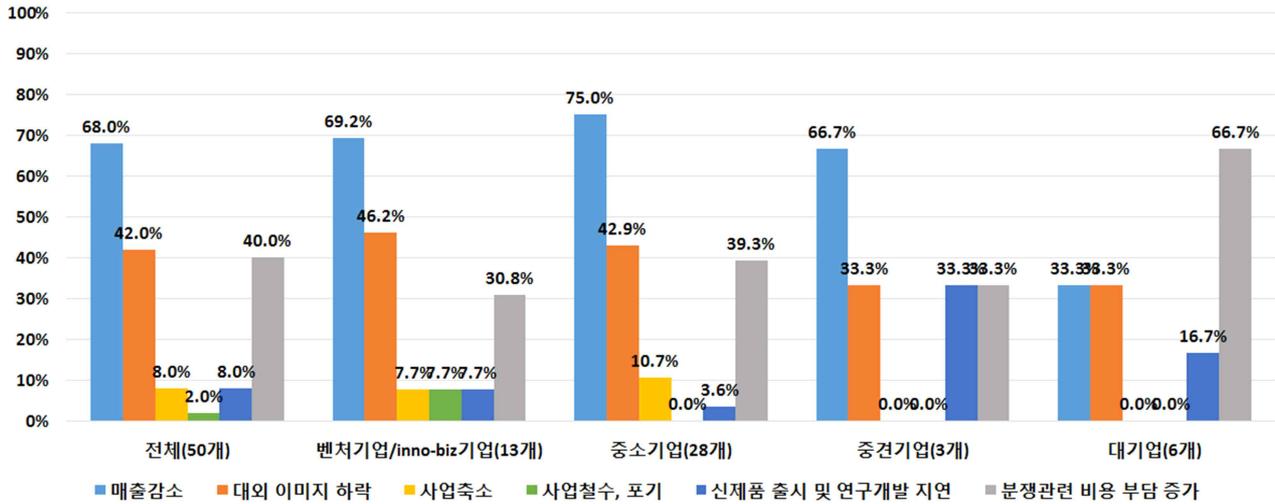
3. 비밀유지명령 위반 벌칙(안 제29조제1항제1호) : 보완필요

-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으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 도입 및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을 마련
 - 개정안에서는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
- 영업비밀은 기업의 핵심 자산이자 재산권에 해당하며, 영업비밀 유출 발생 시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필요

5) 민사소송법(제344조)상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통해 피해자는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나 사업자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

- 특허청 조사결과 영업비밀 유출로 인해 기업은 매출액 감소(68.0%), 대외 이미지 하락(42.0%)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

[그림] 영업비밀 유출 피해



* 자료 : 우리기업의 국내외 영업비밀 피침해 실태조사(특허청, 2016.12)

-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 등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따른 벌칙 조항과 비교해도 너무 낮은 처벌규정을 정하고 있어 법률간 형평성 문제 발생
-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상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⁶⁾하는 등 개정안보다 강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

6)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4(비밀유지명령 위반죄), 특허법 제229조의2(비밀유지명령 위반죄)